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3-003-01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3. 2. 22.

주 문

- 1. 피심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의 를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기준으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서비스를 운영하며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건)
	합 계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하지 않 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21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6조는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제25조까지,제27조부터제31조까지,제33조부터제38조까지 및제59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피심인이 등에 따라 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세부내용(고시 등)	
분리보관 의무 위반	보호법 §21③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 가. 피심인은 를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대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2월 22일

위원장 고학수 (서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성학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서종식 (서명)

위 원 이희정 (서명)

위 원 지성우 (서명)